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건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487
----------	-------

발의연월일 : 2026. 9. 21.

발 의 자 : 김 건 · 윤재옥 · 고동진
임이자 · 김기웅 · 김용태
조정훈 · 김태호 · 윤상현
윤용근 · 안철수 · 김상훈
김도읍 · 한동훈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자원안보 강화를 위하여 핵심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확보하고, 핵심자원의 재자원화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시행 및 관련 사업의 추진, 재자원화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용후제품·산업부산물 등에 함유된 핵심광물을 회수·선별·정제하여 재투입하는 도시광산 기반의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국가 핵심광물 공급망의 안정화 수단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재활용 원료의 안정적 확보와 공급망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지원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도시광산을 활용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활용 원료의 확보·비축·유통, 관련

기술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운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도시광산을 통한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고 국가자원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신설).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도시광산(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배터리, 폐전자제품 등의 폐기물 또는 폐자원에 축적된 금속자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추출한 핵심광물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원료의 확보·비축·유통,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 시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18조의2(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의 육성)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핵심광물의 공급망 안정화를 위하여 도시광산(생활 주변에서 발생하는 사용후 배터리, 폐전자제품 등의 폐기물 또는 폐자원에 축적된 금속자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추출한 핵심광물을 산업 원료로 재활용하는 핵심광물 재활용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u> <u>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핵심광물 재활용산업 원료의 확보·비축·유통,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도시광산 기반시설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u> <u>③ 제2항에 따른 지원의 대상·범위,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